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7. .
제 출 자 : 평창군수(지역도시과장)

1. 제 안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중 대지에 대한 토지주의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원의 안정적·계획적 조달 및
관리를 통하여 주민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 가.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안 제2조)
- 나. 특별회계의 재원(안 제4조)
- 다. 특별회계의 용도(안 제5조)
- 라. 대지보상금 보상원칙(안 제6조)

2.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1』
- 나. 예산조치 :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예정
- 다.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2005-184(2005. 6. 4 ~ 6. 27). 제출의견 없음
- 마. 기 타 : 강원도 시·군별 특별회계 운영현황 1부. 『별첨 2』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군계획 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한다.

제3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3.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5조(용도) ①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기타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매수결정한 토지는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평창군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關係法令 拔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법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 지방자치법

제117조 (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改正 1994.3.16>

『별첨 2』

강원도 시·군별 특별회계 운영 현황

(2005. 7월 말)

시·군별	조례제정 여부	예산액	비고
춘천시	제정	77억원	'03. 11. 7
원주시	제정		'05. 7. 22
강릉시	제정	미운영	'03. 6. 18
동해시	제정	미운영	'03. 8. 2
태백시	제정	5억원	'03. 6. 21
속초시	제정	32억원	'04. 11. 22
삼척시	미제정		
홍천군	제정	미운영	'03. 7. 9
횡성군	미제정		입법예고 완료
영월군	제정	미운영	'05. 1. 8
정선군	미제정		
철원군	제정	10억원	'04. 10. 8
화천군	미제정		
양구군	미제정		
인제군	미제정		
고성군	미제정		
양양군	제정	미운영	'03. 2. 28